

서울市를 中心으로 한 鷄肉流通改善의 現況과 改善方向

이번의 육계유통개선은 간이 도계장 설치등 많은 문제점이 있으나 당국은 이번이 육계유통 개선의 마지막 기회임을 알고 76년 서울시 유보조치 되게는 문제점을 철저히 검토하여 79년 2월 1일부터의 시행에는 단속보다도 지도 위주의 행정력이 가해져서 문제점을 하나하나 해결하므로서 위생적인 도계유통이 기필코 이루어 져야 하겠다.

金玉經

(농수산부 가축위생과 위생계장)

1 머리말

1974. 12. 26. 축산물가공처리법이 개정(법률 제2738호)되어 처음으로 농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안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닭이 동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닭에 대하여 동법의 적용을 받도록 한 목적은 계육의 위생처리 공급, 시장 환경의 정화, 가축전염병 만연방지 및 부산물의 집중활용등이었다. 그러나 동법이 시행된지 4년이 지난 지금도 당초 목적을 이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975. 9. 23 닭의 적용지역으로 서울, 부산, 수원, 성남, 대전, 광주 및 대구를 지정 고시하여 시행하였으나 서울시는 유통상의 문제점이 야기되어 1976. 12. 29일 유보조치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77. 12. 31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개정하여 서울시 유보시의 문제점을 보완하였으므로 본 논고에서는 육계유통개선을 위

한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을 서울시를 중심으로 기술해 보고자 한다.

2 . 현황과 문제점

가.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요지
농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내에서는 위생적으로 처리된 계육만이 유통되어야하나 告示地城內의 도계장설치부족으로 도계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고시지역 외 즉 양계생산지나 집산지에서도 도계장을 설치하여 계육유통지역으로 반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검사제도는 과거 국가공무원이 하던 것을 일반 수의사중에서 채용하여 스스로 위생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자체검사제도로 전환하였으며 효율적인 위생관리를 위하여 자체검사업무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인 축산물검사원이 수시 검사로 감독하게 된다.

시장내 생계업자(생닭집)를 점차 판매업으로 유도하는 전제 하에 시한부(3년)로 간

이도계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간이도계장의 제품은 전량검사를 생략하고 수시검사를 하게된다. 그러나 간이도계장의 설치에는 건축법, 도시계획법 및 환경보존법등에 제약이 많으므로 실제로 시행상에는 문제가 있을 것 같다.

나. 수축(닭)의 적용지역 개정고시

농수산부고시 제3006호(78. 8. 5)

닭의 적용지역으로 서울시의 유보를 해제하고, 성남을 제외시켜 6개지역(서울, 부산, 대구, 수원, 대전, 광주)으로 하였다.

서울시는 전지역으로 하였으나 과거 유통상의 문제점이 야기되어 시행이 유보되어온 지역이므로 서울특별시장은 도계처리능력, 유통체계확립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일정지역부터 실시하여 점차 전지역에 확대실시 한다.

서울시는 준비 및 계몽을 위하여 1979.

2. 1부터 시행하게 되나, 시행이전에 도계장설치, 기존도계장의 시설정비, 유통체계 확립 및 도계제도에 대한 PR등 유통여건이 개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시행일이 얼마남지 않은 현재까지 도계장설치허가 신청이 별로없어 시행상에 문제점이 노출되지 않나 염려된다.

다. 도계장설치상황

닭의 적용지역을 중심으로 도계장설치상황을 살펴보면 서울 8개소, 부산 2개소, 경기 3개소, 대전 1개소, 광주 2개소, 대구 1개소이며 서울시의 8개도장이 가동시 早朝 3시간 처리할 경우 약36, 000首 8시간 처리할 경우 약90, 000首 이다.

서울시의 성수기 계육소비량은 약 20만首(비수기 약 12만首)이므로 서울 경기지역의 도계장은 서울시 전역을 일시에 시행하기 위하여는 많이 설치되어야 한다.

계육은 유통상 早朝에 집중처리 공급됨으로 다량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며,

早朝공급능력이 부족함으로 생산농가에 생계가 체화되어 생산지가격은 하락하고 소비자가격은 상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소비자의 측면에서 보면 일반가정 소비자들은 수천년간 담습하여온 소비자의 관습 즉 시장내의 닭집에 계류되고 있는 생계의 형태와 색깔, 무게등을 직접보고 그 장소에서 자기 기호에 맞는 닭을 선택도계하여 단시간내에 가정에 운반하여 요리하는 관습이 있으며 특히 냉동된 닭은 싫어하는 관습이 있다. 일반가정소비자의 기호와 습관을 고려하여 개정된 축산물가공처리법에 간이도계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시행에 문제가 많을 것 같다.

현준 시장내의 생계업자의 직업전환, 도계육의 판매시설 및 판매제도, 도계장 경영주의 영세성, 세원노출을 우려하여 위생업소(삼계탕집, 통닭집등)의 도계육이용기피등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많이 있다.

3. 개선방향

닭고기의 유통개선을 위하여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제정하여 약 4년간 추진해온 결과 서울을 제외한 지방의 계육유통지역은 어느정도 체계가 확립되어 가나 아직 개선해야 할 점이 많으며, 서울시는 유보조치등 시행착오를 경험하였으므로 앞으로는 관련기관의 상호 진밀한 협조로 축산물가공처리법의 입법취지에 입각하여 위생적인 계육의 유통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공히 보호하는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한다.

본장에서는 계육유통의 채널에 직접 간접으로 관련되는 행정당국, 생산자, 도계업자 및 소비자 측면으로 구분하여 각자 개선 또는 추진해야 할 사항을 기술해 본다.

가. 행정당국

산업의 발전과정을 보면 초기에는 관주도형으로 발전되다가 점차 민주도형으로 이행하게 된다.

육계유통개선은 아직 초보단계이므로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많으며 행정당국이 적극 개입하여 개선해야 함으로 행정당국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다.

행정당국은 1976년의 서울시 유보조치 이유를 한번 더 살펴보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

유보의 주요이유는 첫째로 유통체계의 미확립으로 생산지의 생계체화현상이 일어나 생산지가격하락 및 소비 가격의 상승등 가격의 불안정현상이 발생한 점이다. 둘째로 도계처리능력의 부족이다. 즉 도계장수의 부족이다. 당시 서울시의 1일 닭소비량은 8~10만수이나 도계장의 1일 처리능력은 3~4만수에 불과하다는데 있었다. 세째로 일반가정소비자의 기호에 부적합 및 인식부족, 네째로 시장내 생계업자의 반발 및 세원노출을 우려한 요식업소의 도제품이용 기피등을 들 수 있다.

행정당국은 위의 유보이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전철을 반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겠다. 우선 먼저 서울시는 도계처리능력조사(서울시내 및 주변 반입 가능지역) 및 서울시 1일 계육소비량을 정확히 조사하여 종합시행 방안을 수립 시행지역을 선정 발표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시행지역을 선정함으로써 도계업자들의 도계장정비 및 설치토록 유도함과 동시에 시장내 생계판매업소의 간이도계장 설치 또는 도계판매업소로의 직접전환, 및 지역주민에 대하여 도계제도의 PR등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또한 행정당국은 유통체계의 확립을 위하여 생계수집상 및 시장내 생계판매업소를 유통의 흐름속으로 흡수하여 반발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판매망구축을 위하여 기존 정육점 및 농협직매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판매업소를 확보하여 생산에서 소비까지 유통의 흐름에 차단이 없도록 한다.

행정당국은 도계제도 및 도계육이 병계나 폐계가 아니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계몽하여야 한다. 계육의 유통형태를 보면 대략 대량수요자(요식업소)의 소비가 전체소비량의 60%에 해당하고 나머지 40%가 일반가정소비이다. 즉 통닭점이나 삼계탕점에서 소비되는 60%의 닭고기가 즉석에서 처리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일반가정소비자에게 인식시켜야 한다. 또한 냉동육에 대한 P.R 및 요리방법이 개발되어 맛에 지장이 없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

1979. 2. 1부터 서울시내 실시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적발위주의 단속보다는 초기 단계에는 지도위주의 행정력이 가해져서 문제점이 하나 하나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당국은 이번이 육계유통개선의 마지막 기회라 보고 초기단계에서 발생되는 사소한 문제는 기필코 극복할 것이며 반드시 성공으로 이끌어 위생적인 계통유통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나. 생산자와 도계업자

육계유통개선을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생산자와 도계업자가 담당해야 할 중요한 업무가 너무나 많다.

생산면에서 볼 때 생산자와 도계업자는 계약생산을 함으로 처리능력부족으로 인하여 생계가 체화되어 유통에 혼란이 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생계수집 또는 수송측면에서 볼 때 과거 생계수집상 또는 오도바이상의 역발을 생산자와 도계업자가 상호 진밀히 협조하여 유통의 흐름이 차단없이 담당하여야 한다.

도계측면에서 볼 때 대량양계업자들은 양계생산지나 집산지를 중심으로 자가 도계장 설치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이제는 과거와 같이 생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생산자가 도계장을 설치하여 도계를 담당함과 아울러 나아가서 부산물의 집중활용 및 계육가공품 개발에도 참여 하여야 할 것이다.

계육판매측면에서 볼 때 도계업자는 기존 판매조직(정육점등)을 활용함과 아울러 독자적인 판매업소를 확보하여 위생적인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시설설치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다.

생산자나 도계업자는 과거의 오도바이상 생계수집상 및 생계판매상등이 유통의 흐름 속에서 흡수되어 일할 수 있도록 최대한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생산자와 도계업자는 자기상품을 스스로 보증하고 좋은 상품임을 적극 P.R하여 소비자에게 인식을 시켜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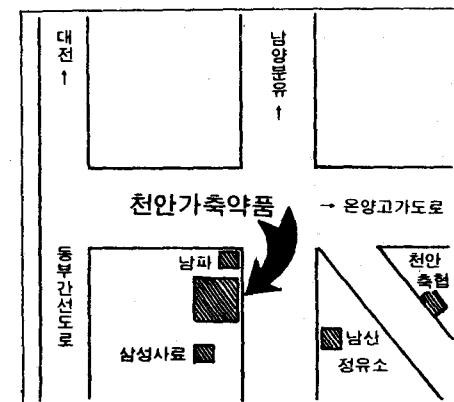
다. 소비자

“소비자는 왕이다”라는 말도 있으나 일반 가정소비자는 도계품은 병계나 폐계가 아닌가 하는 의아심으로 직접 생닭을 보고 사는 종래의 팬습은 일소하고 전염병 전파방지, 시장정화(공해방지) 및 위생적인 계육 공급등의 목적에서 적극 추진코자 하는 계육유통개선정책에 적극 협조를 바란다. 또한 계육소비의 많은 량을 찾이하는 요식업소에서는 세원노출이 우려되어 밀도 계품을 이용하지 말고 도계품 사용으로 건전한 유통체계확립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4. 결 어

이상 위에서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고찰해 보았는데 한마디로 말하여 생계유통에서 도계유통으로의 전환점에 있어 계육유통개선을 위하여는 닭유통에 관여하는 모든 분이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즉 행정당국은 유통여건조성 및 적극적인 행정지원 생산자 및 도계업자는 양측이 직결되어 생산, 수집, 도계 및 판매등을 담당함으로 유통체계의 흐름에 막힘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소비자는 정부의 정책을 믿고 적극 협조하여야 계육유통개선은 이루 될 것으로 믿는다.

천안가축약품상사가 드리는 모든 혜택을 값지게 활용하세요



- 취급종목
○각종기구·사료통·자동급수기
○양계및 대·중 등물약품
○각종 백신·첨가제·소독제
○영양제·치료제
○질병상담 및 왕진
자동주사기·타입스위치
○병아리 분양일선

천안가축약품

천안시 원성동 600-12
TEL. 5989

수의사 노 대 환